등급	RTO	RPO	대상업무	재해복구센타 운영 내역
				- 재해복구센터에 전용서버와 스토리지 평시 구축
1	재해선언 후	재해발생	조직내부	및 대기 상태 유지
등급	3시간 이내	직전	핵심업무	- 스토리지 기반 실시간 복제
				- 3시간 내에 재해 직전 데이터로 업무재개
2	재해선언 후	재해로부터	대국민	- 공용서버와 스토리지 평시 구축
_				- NAS기반 일주일 간격 복제
등급	48시간 내	1일~1주일	연계 업무	- 백업매체(테이프, NAS디스크)를 이용하여 복구
3	재해선언 후	재해로부터	중앙행정기관	- 평시는 백업데이터만 소산 보관
				- 재해 시 별도 하드웨어/소프트웨어 도입 후
등급	48시간~1개월	1일~1주일	공통업무	선무재개

표 13 - 재해복구센터 운영방법 (예시)

7 필수기록물의 이용

7.1 일반사항

필수기록물은 비상사태나 재난발생 이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필수기록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, 조직, 개인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.

7.2 이용원칙

필수기록물의 보호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필수기록물 이용에 관하여 다음 의 원칙을 준수한다.

- · 필수기록물 보호기관의 장은 필수기록물 이용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다.
- · IT자원 관리를 위한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을 필수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.
- 필수기록물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 책임자, 이용 목적, 이용 대상, 이용 기간 등에 관하여 보호기간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한다.
- 필수기록물 이용시는 복본을 사용한다.